'93품질경영진단지도 실시요령

1. 진단 지도사업 목적

중소기업의 품질경영 추진체계를 중소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제조업 품질체제의 저변강화와 품질경영시스템 확립 및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획득을 지원하고자 함

2. 진단지도 대상업체 및 진단요원의 선정

가. 진단업체의 선정

① 외국 구매자로부터 ISO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요구 받은 업체
② 중소기업 품질경영 선도기업
③ 등급 및 KS업체, 기술선진화 업체, 세계일류화 업체순
④ 대기업은 당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
⑤ 특히 타기관 지도 업체(공진청 타국 포함)는 제외하거나 타기관 지도를 유보하도록 하여 중복지도가 되지 않도록 할 것

나. 진단 요원의 선정

① ISO 9000시리즈 심사원 자격 보유자
② 국제품질보증시스템 도입대책 실무위원회 위원
③ IQA 심사원 과정 합격자(심사원보)
④ 연수기관의 ISO 9000관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자
⑤ 품질관리기사 1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품질경영 지도경력 보유자,

단, ③, ④, ⑤항 해당자는 진단요원 양성 과정 수료자

○ 진단 대상업체의 희망진단요원 또는 현장지도 경험이 풍부한 해당지역 내의 진단요원 선정
○ 동진단 위원이 부족한 경우 타 지역의 적정 진단요원 선정
○ 진단요원 1인당 적정 진단업체 선정
  – 진단업체 : 10업체 이하
  – 년간 진단일수 : 120일 미만

다. 진단기간

① 업체당 12일을 원칙으로 함
② 진단효과가 미흡하거나 진단업무수행 곤란업체는 1회(3일이내) 진단으로 종료하고 잔여 일수는 우수업체로 배정
③ 진단은 반드시 3회 나누어 실시하고, 최초 1회 진단기간은 3일, 2·3회는 진단기관의 자율에 맡김

- 1차 진단 : '93. 4월~ 6월
- 2차 진단 : '93. 7월~ 8월(추가신청업체)
- 3차 진단 : '93. 9월~11월 15일
  (추가신청업체)

라. 진단내용 및 진단기준

① 진단내용
- 품질경영시스템 조직 및 문서화 실태
-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체계 파악
- 품질시스템 원칙 내용 및 내부감사 방법
- 품질메뉴얼의 작성 및 활용상태
- 기타 필요한 사항

② 진단기준 : 품질경영 시스템 진단기준

3. 품질경영 진단 지도 실시

① 진단기관별 '93품질경영진단 지도 자체계획 수립실시
- 본 추진절차 및 실시요령에 따라 단계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공진청에 보고를 한 후 추진하되 필요시 당청과 예산 및 업무 협의 요망

※ 보고시 선정기준을 기재할 것(예 : KS업체, 기술선진화 업체 등)
- 신청기간 이외에도 업체의 진단신청서 수시접수가 가능함

② 진단업체에 대한 내용
- 진단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진단비용을 접수한 후 진단계획을 수립할 것.(지방공업기술원의 경우 직접 진단할 경우 진단비용접수는 필요하지 않음. 다만, 타진단기관 요원을 활용할 경우 진단요원 소속기관에 비용을 납부토록 할 것)
- 진단비용은 3일간 진단수당 및 여비로 함 (수당 1일 68,800원, 여비 : 공무원 3급 여비기준에 준함)

③ 각 진단기관은 진단실시후 진단중단, 취소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할 것

《진단계획의 변경시 조치》

구 분	사 례	조 치 사 항
○ 진단일자 변경	○ 업체의 사정에 의한 변경 ○ 진단요원 사정에 의한 변경 ○ 기타 사정에 의한 변경	○ 진단요원과 진단업체가 사전 협의하여 변경실시하고 진단 보고서는 반드시 실제진단 일자를 기록할 것 ○ 필요시 업체 및 진단요원에 변경사항 통보
○ 공장 진단중단	○ 업체 요청시 ○ 진단요원이 제출한 공장진단실시 보고서에 진단중단 의사의 표시(경영자의 열의 부족, 공장부도 등) ○ 진단비용의 처리 – 1일 진단후 중단 – 3일 진단후 중단	– 업체납부 비용중 1일진단에 따른 여비 수당을 제외한 비용은 환불 – 비용 환불은 없음

4. 협조사항

가. 진단내용

① 진단내용
- 진단을 실시한 후 여비·수당신청시 진단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
- 진단이 끝난후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 보고(양식 추후 통보 예정)

② 우수사례 선정 보고

나. 진단업체

1) 진단에 필요한 사항

① 대표자를 비롯한 경영간부는 품질 경영 진단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인력을 최대한 지원요망
- 생산현장 작업자를 포함한 전사원의 진단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요망

② 진단 일지 작성비치
- 진단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단목표, 내용 및 실시내용등을 일지에 상세하게 기술해서 비치 요망

2) 진단상황 보고등

① 진단실시
- 진단을 실시한 때마다 별지서식에 의거 진단요원과 공동으로 보고
- 진단이 완료된 후에는 진단요원의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

3) 진단비용의 사전 납부

다. 진단요원

1) 진단요원이 지켜야 할 사항

① 진단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참고자료의 사전 확보

② 경영자 및 종업원에 항상 친절하고 공손하게 진단실시

③ 진단계획에 따른 진단일자 및 시간을 엄수

④ 진단사업 수행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외부 누출금지

2) 진단상황 보고등

① 세부진단 계획 수립제출
진단업체, 진단일수 학정에 따라 업체별 세부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진단기관을 경유하여 공진청에 제출

② 진단 실시결과 보고
진단이 완료되면 10일이내 종합보고서 작성

③ 진단여비 및 수당지급을 위한 구좌개설(개인 또는 단체)
여비 및 수당은 은행구좌로 송금

5. 예산 집행요령

가. 지원범위

○ 지방공업기술원은 품질경영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본청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지원

○ 기타 진단 기관은 진단에 소요된 실비(진단수당 및 여비) 지원

1) 수　　당(104)

○ 진단수당
- 적용단가 : 68,800원

- 진단일수 : 12일(업체에서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3일 포함)
  - 12일 이상 진단이 필요한 경우 공진청과 협의

2) 국내여비(211)

① 지급기준

- 공무원 : 공무원 국내여비규정(6급)
- 진단지도요원 : 공무원 국내여비규정(3급상당)

② 소요액 산정

(단위 : 원/일)

구 분		전 국	도 관 내	시 군 관 내
진단요원	숙 박	38,800	34,800	-
	비 숙 박	27,100	20,300	5,000
직 원	숙 박	27,400	24,700	-
	비 숙 박	20,600	16,400	4,500

※ 여행일수의 계산 : 육로여행거리(왕복) 400㎞ 1일로 계산

3) 추가지원

당초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나 상기 예산외의 진단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

진단업체와 진단요원(직원)간의 여행거리를 계산하여 경제기획원 예산편성기준의 국내여비 1일 단가 적용

- 진단지도 : 진단요원이 최종 진단확정 일수에 따라 진단
- 중간점검 : 필요시 자체직원이 1업체당 1일씩 점검
- 기 타 : 세미나실시등 진단지도와 관련 여비는 실소요액 반영

나. 집행방법

1) 수 당(104)

① 진단수당

- 진단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원천징수할 것(단, 공공기관의 진단요원 수당은 원천징수없이 해당기관의 세금계산서 청구후 직접 지급)

② 국내여비(211)

- 진단요원, 진단업체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확정하고 변동사항 있으면 즉시, 필요한 조치를 취함
- 진단 여비는 사후(매월 단위)에 지급하되 계좌입금토록 함

다. 소요예산 요구

〈국가기관(기술원)〉

'93진단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므로 확정 즉시 요구할 것

〈기타기관〉

'93진단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자체 세부진단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진단에 소요된 여비 및 수당을 매월말 기준 익월초에 공업진흥청 인증관리과에 청구